수상레저종합보험 상품요약서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1)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순수보장성상품으로 연간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기간 : 1년

4)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분납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의무보험 관련 사항

1)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1항에 따른 금액 이상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등록대상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배상책임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한도
사망/후유장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으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100%

※ "상해" 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분석표 예시

*** 수상레저사업자 동력수상레저기구 기본보험료(탑승인원 1인당) *피견인기구 견인 : 미해당**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배상책임	대인	1 억 5 천만원
	대물	2 백만원
사망/후유장해		1 억원
보 험 료		**1,290,200 원**

4. 보험료 산출기초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